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안내

이 책자는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하였음



인 사 혁 신 처
인 사 혁 신 기 획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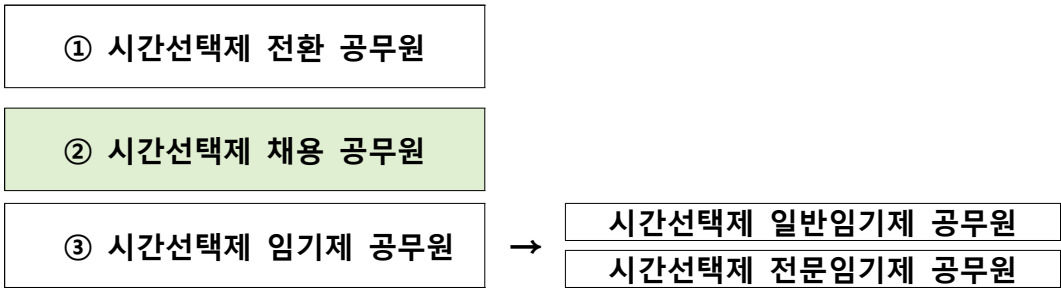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안내

I 시간선택제 공무원

○ 개념

-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전일제와 대비되는 개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도입 배경

-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 등 실현

< 국가직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연도별 채용 현황 >

총 채용인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672	366	353	461	492

○ 연혁

- 시간제공무원제도 도입근거 마련('02년 국공법 개정)
- 육아휴직대상자에 부분근무 공무원제도 도입('05년 공무원임용령 개정)
- 부분근무 공무원제도 폐지, 시간제 근무 도입('07년 공무원임용령 개정)
-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제도 마련('13년 공무원임용령 개정)
- 시간선택제 수당 지급체계 조정(공무원수당규정 개정, '14.1.8)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 제57조의3), 공무원임용규칙(제12장)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개요

- (채용대상) 7급 이하 채용. 중앙부처의 경우 전문분야는 인사혁신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 채용 가능

- (근무시간)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근무 → 오전·오후·야간·격일제 가능

※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나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
 ③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 (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보수)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비례,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 동일

- (연금) 국민연금 적용 *18.9.21일부터 공무원연금 적용

- (겸직)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 시 겸직 가능

- (전일제로의 전환) 공개 또는 경력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활용하기 적합한 공무원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간호해야 하는 경우 ▶ 건강상 이유로 종일 근로는 곤란한 경우 ▶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 퇴직 이후의 삶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중·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근로관행의 개선 ▶ 일과 가정 등 개인 삶의 균형 유지 ▶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구직자 선택의 폭 증가 ▶ 탄력적 인력 활용 ▶ 근무 만족도 향상

1 신규 채용

○ 신규 임용(법 제26조의2, 임용령 제3조2)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 가능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전일제공무원의 전환은 공개 또는 경력경쟁에 따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공무원임용령(제3조3)

-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6]

○ 채용 분야

- 전문적인 업무분야를 포함한 시간선택제 근무 적합도가 높은 직무분야를 발굴, 중점적으로 채용
- 시간선택제 정규직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 단순 집행업무 분야는 물론, 통·번역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도 채용 직위 적극 발굴
 - ※ 7급 이하 채용이 원칙이나 전문분야는 인사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 채용 가능

《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분야 예시 》

중앙	전문자격·지식 활용 업무	통·번역, 교수요원, 법률해석, 회계검사 등
	대체가능한 정형화된 업무	민원서비스, 주차단속, 우편배달, 운전, 방호
	특정시간대 업무	도서관·박물관·고궁(휴일·야간), 간호사(24시간)
	행정관리 업무	도서관리, 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관리, 정보공개업무, 문서접수 분류
지방	전문자격·지식 활용 업무	외국어 통·번역 등
	권역/대상구분 가능업무	주·정차 등 단속, 전화교환,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등, 상수도 사용료 검침, 체납징수, 공중위생업소·보육시설·불법광고물 등 단속
	특정시간대 집중업무	속기, 사서
	행정관리 업무	문서접수 분류, 관용차량 운전, 도서관 정리, 보건지소 운영, 차량등록, 인·허가증 배부, CCTV 모니터링

○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숭선수범하여 장애인·저소득층을 우대함으로써 균형 인사 도모(우대요건 설정 등)

구 분	적용대상	법정비율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 채용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 이내

○ **채용 방식**(임용령 제16조)

- 국가직 공무원은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칙
 - * 인사혁신처 일괄 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 후 해당 기관에 임용후보자 추천

- 다양한 자격요건 적극적인 활용
- 최저 임용자격기준의 임의적인 강화 제한
- 심층면접 등을 활용한 적격자 선발

○ **경력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임용**(임용령 제18조)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신규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음
- ※ 임용유예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임용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가능

◇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관리하되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평정 등에 있어 차별하지 말아야 함

2 인사관리

○ 정년

-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60세)과 동일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재직기간 (임용규칙 제95조)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방식

$$\text{시간선택제근무기간} \quad \times \quad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항에 의한 근무시간

○ 보직관리 (법 제32조의5, 임용령 제44조, 제45조)

- 과장, 출장소장, 사무소, 관리소장 등 관리직위에 보직 원칙적으로 불가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가 적합한 동일직렬 내 유사업무 분야로만 전보 가능
- 다만, 최초 임용 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은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이내 전보불가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 시간선택제근무 적합분야로만 전직 가능, 전일제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
-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충 상담 실시 (임용규칙 제93조)

○ **시보** (국가공무원법 제29조)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5급(상당)은 1년, 6급 이하 6개월

○ **승진** (임용령 제31조, 임용규칙 제5조)

- 승진가능 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 전일제 : 9급→8급(1년 6개월 이상), 8급→7급(2년 이상), 7급→6급(2년 이상)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식〉

$$\text{시간선택제근무기간}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한시임기제공무원도 동일

※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3.12.31>

- 근속승진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 전일제 : 9급→8급(5년 6개월 이상), 8급→7급(7년 이상), 7급→6급(11년 이상)
- 승진후보자명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또는 전일제와 통합하여 작성

○ **대우공무원**

-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 전일제 : 5,4급(7년 이상), 9급~5급(5년 이상), 연구사 및 지도사(10년 이상)

○ **파견** (임용령 제41조, 임용규칙 제30조)

- 파견 직위가 시간선택제 직위로 운영 가능한 경우 파견 가능

○ **인사교류** (법 제32조의2, 임용령 제48조)

- 행정기관 상호간 필요할 경우에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위 내에서 인사교류 실시 가능

○ 휴직

- 질병치료, 육아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임용규칙 제58조)
- 징집, 소집 등 병역으로 휴직할 경우 (임용규칙 제59조)
 - 현역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한 때
 - 사관후보생,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 ※ 이 밖에도 법정의무이행, 연수 등의 사유로 휴직 사용 가능
- ※ 경력인정은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질병휴직·병역휴직·육아휴직만 가능

휴직종류	요건	기간	경력인정	봉급
질병휴직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불임·난임 포함)	1년(1년범위 연장가능) (공무상은 3년 이내)	불인정 (공무상은 인정)	1년이하 7할 1~2년이하 5할 (공무상은 전액)
고용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과 민간기업에 임시 채용된 때	채용기간 (민간은 2년)	인정	미지급
유학휴직	해외유학(학위, 어학연수)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	5할 인정 (1년 이내)	5할 지급 (2년 이내)
육아휴직	만 8세 이하(취학시 2학년 이하) 양육, 임신·출산한 때	자녀당 3년	자녀당 1년 (둘째자녀부터는 모두 인정)	최초3개월 8할 (상한 150, 하한 70) 수당 4할 지급 (1년 이내 상한 100, 하한 50)
가사휴직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간 호가 필요한 때	1년(총 3년)	불인정	미지급
해외동반휴직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2년 연장)	불인정	미지급
자기개발휴직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등을 하게 된 때	1년	불인정	미지급

○ 결원보충 (임용령 제42조)

- 임용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파견, 육아휴직(3개월 이상)인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 2014.11.19>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정·현원관리** (임용령 제97조)

-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지정된 직급의 정·현원은 전일제근무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구분 관리함

3 교육훈련

- ◇ ‘先교육 後배치’ 원칙을 준수하여 신규채용자에게 요구되는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치
- ◇ 각종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적극 포함하고 사이버교육, 직장 내 멘토링 등을 통하여 조기적응 지원

○ **기본교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자체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직무교육 등 보완 실시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상시학습)**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은 다음 계산식을 따름

$$= \text{당해계급 시간선택제 근무연수} \times \text{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근무시간 비례)}$$

-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 기준시간

$$\text{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frac{\text{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times \text{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근무자 기준 상시학습시간 예시**

적용 대상		교육훈련(상시학습) 기준시간	
		전일제	시간선택제
일반직 4급 이하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신설직렬 제외)		80시간	40시간
관리운영직군· 신설직렬	사무운영 직렬	40시간	20시간
	운전·방호 직렬	10시간	5시간
	기타 직렬	20시간	1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단기간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임용되므로 승진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

- 직장교육,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등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실시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단기간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임용되므로 승진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님
- 국내·외 장·단기 위탁훈련은 별도 선발기준 마련 후 안내

4 보수

◇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되, 장기간 재직 시 전일제공무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 공무원보수규정·수당규정 개정('14.1.8 시행)

	종 전		개 선
호봉승급	근무시간 비례하여 기간 산입	→	1년 단위 승급(전일제와 동일)
수당	근무시간 비례하여 지급 * 정액급식비 : 근무일수 비례		근무시간 비례하여 지급하되, 복리 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 * 정액급식비 : 근무일수 비례

○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3, 제13조)

- 전일제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 지급

※ 예시) 7급3호봉(1,953,200원)으로 임용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주20시간 근무 시
 * 월 봉급액(정상근무시 봉급액 × $\frac{20}{40}$) ⇒ 976,600원

- 승급기간 :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 「공무원보수규정」 관련 조문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2.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 4.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

○ **수 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 전일제에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 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
-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 지급
 - ※ 지급액 = 전일제공무원 지급액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 /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 근무일수]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같이 상한액 월 10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정근수당 지급 시, 시간선택제 등의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 일제와 같이 근무연수에 1년 단위로 산입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전일제와 동일
- 특수업무수당 지급
 - ※ 지급액 : 근무기간 5년 이하는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5년 초과는 8%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5 **성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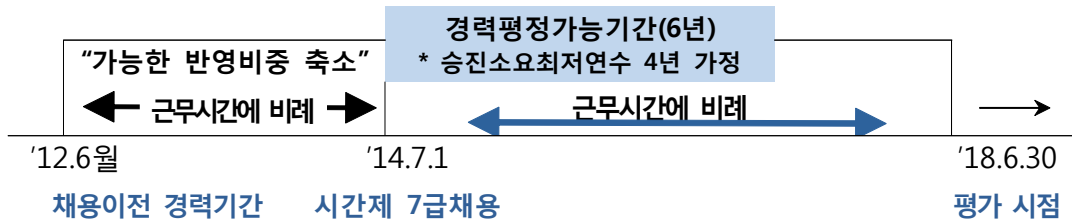
○ **근무성적평가**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전일제와 동일 방식으로 평가

- * 근평 대상인 실 근무기간 1개월 이상 요건도 전일제와 동일(근무시간 비례 아님)
- 전일제와 구분하여 별도 평가단위를 구성할지 여부는 각 기관 자율사항이나 시간제 근무에 따른 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평가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상 평정의 일반원칙 준수

○ **경력평정** : 근무경력은 기본적으로 재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각 기관에서 결정하되, 전일제와의 형평성 및 민간경력 우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채용 전 경력의 반영 비중이 높아질 경우 경력단절자 등 채용이라는 시간선택제 채용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시간제 공무원 근무기간만 대상으로 하도록 설정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성과상여금** : 지급기준액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

- 반드시 전일제와 구분하여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

6] 맞춤형 복지

- ◇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
-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 ※ 휴직·시보근무·국외 파견 중인 자는 맞춤형 복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가능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복지점수 : 기본복지점수 +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

○ 복지항목 구성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6조)

구 분		구 성	사 례
기본 항목	필수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생명/상해보험
	선택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율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 개인별 복지점수(기본+근속+가족점수) * 1점은 1천원에 상당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점 일률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연수 1년당 10점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1인당 50점 * 단,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 상세 내용은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www.gwp.or.kr)을 참고
 ※ 민간시스템 사용기관은 해당기관 맞춤형 시스템 참고

7 장기급여

○ 퇴직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

구 분	종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 지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지급

※ '18.9.21일부터 공무원연금 적용 이후에는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 지급

○ 공적연금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 *18.9.21일부터 공무원연금 적용

※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전일제(全日制) 공무원만이 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이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연금 적용 예정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재직기간 계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시행령 제16조의4)

-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 계산 (법 제23조제6항)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

※ {시간선택제근무기간 × 1/2} + {(시간선택제근무기간×1/2)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1일 미만의 일수는 1일

※ '18.9.21일부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시 재직기간 감축제도 폐지(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채용시험 등을 거쳐 전일제로 된 경우 경력합산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하여 적용

○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18.9.21일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 단, 별정직과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실업급여에 한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18.9.21부터 공무원연금 ◦ 건강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18.9.21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 ◦ 건강보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18.9.21부터 공무원연금 ◦ 건강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18.9.21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 고용보험(임의가입 대상)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목개정 2013.6.4]

8 상훈

- 포상 대상·훈격·요건, 절차 등은 「상훈법」 및 「상훈법 시행령」에 따르며, 서훈 기간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 지침」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참조

- *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3] 겸직 허가

○ 겸직허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 위 영리업무 금지요건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의 경우 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겸직허가 기준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며,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무시간외 겸직업무 종사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비교적 폭넓게 겸직 여부를 판단함
- 소속 기관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영리업무가 낮은 급여로 인한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지를 반드시 고려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및 겸직하는 업무의 통상적인 급여수준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가능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등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음
- 겸직업무의 내용이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등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근무시간 외에 겸직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 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 및 시간외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겸직허가 절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소속 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함(다만,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채용하려는 행정기관은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의 단계에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외부강의)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로 본인·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자문위원·전문 상담 등)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직무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은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자문위원·전문상담사로 종사 가능

(저술, 출판, 번역 작가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4 휴가

- (연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임용규칙 제98조)

$$\frac{\text{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text{시간}$$

※ 이 밖에도 재해구호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 사용 가능

- (병가) 공무상 사유로 병을 얻은 경우 180일, 다른 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 단위로 허가
- (특별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등 실시 가능

구 분	실시요건	휴가일수
경조사휴가	결혼 : 본인(5일), 자녀(1일) 출산 : 배우자(10일) 입양 : 본인(20일) 사망 : 배우자(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등	1~20일
출산휴가	공무원 본인 출산 전·후	90일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i)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 ii)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	매일 2시간 이내 매일 1시간 이내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i)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 ii)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	(24개월 범위) 매일 2시간 매일 1시간
여성보건휴가	매 생리기와 임신기간 중 ※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매월 1일
불임치료시술휴가	불임치료시술 당일	1일

※ 이 밖에도 재해구호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 사용 가능

5 단체활동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6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8조)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범위 : 집단행위 금지대상 이외 6급 이하 공무원
- 공무원노동조합 가능한 공무원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등
- 단, 6급 이하의 경우라도 지휘·감독·총괄업무담당자,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공무원, 교정·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감독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가입이 제한됨
- 경찰·소방 등 엄격한 지휘복종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특정직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제한됨

참고 1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유형별 비교

구분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자	적용여부		
		채용자	임기제	
시간선택제 대상	○ 모든 공무원 * 정무직 제외	7급 이하 *전문직 상위직급 가능	× 채용	
인정사유, 기관 및 분야	○ 제한 없음	단순집행, 전문, 지식 등	○	
허용기간	○ 최소 1개월 이상(월단위로 허용) - 종전에는 최대 3년만 허용	정년	× (최대10년)	
복수분야	1주당 근무시간	○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주20시간 (±5시간)	주15~35시간
	근무유형	○ 기관 자율 원칙하에 다양한 근무유형 가능 * 매일 특정 시간대, 격일제,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 *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는 불인정 *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오전(9-12시), 오후(13-18시) 단위로 근무 권장	○	○
	연 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허가	○	○
	병 가	○ 일단위로 허가하며 일반병가 60일, 공무상 병가 180일	○	○
보수분야	봉급	○ 정상근무 시 지급받는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	○	○
	승급	○ 1년 단위로 호봉 승급	○	× 연봉제
	수당	○ 정상근무시 지급받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시간외근무는 최대한 자제하되, 1일 4시간 인정	○	○
복지분야	공무원 연금	○ 시간선택제단위로 근무한 기간전체를 재직기간에 합산 ○ 퇴직수당의 재직기간 계산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급여액 산정의 기초 및 기여금 징수 방법은 감액된 보수 지급시 전일근무시 받게 될 보수를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 징수	× (‘18.9.21일부터 공무원연금 적용)	× (‘18.9.21일부터 공무원연금 적용)
	맞춤형 복지	○ 전일제공무원과 동일	○	○
승진연수.경력평정 기간 산정	○ 각 계급별로 1년 범위내에서는 전일제와 같이 100%반영 - 1년 초과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근무시간 비례	× 평정제외	
성과관리	○ 시간선택제근무자 1인의 성과관리는 전일제근무자와 동등하게 처리 - 단, 2인 이상이 분담하여 업무수행시 개인별로 성과관리 및 성과급 지급	○	○	
교육훈련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시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 기준 시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 승진배제	
	○ 국내외 장단기 위탁훈련	○	국내단기교육 일부만 인정	

참고 2

전일제 · 시간선택제 보수 비교

* (예시) 전일제 공무원과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 비교

구분	전일제(A)				시간선택제(B)*					차액 (A-B)
	계	월 봉급액	공 통 수 당		계	월 봉급액	공 통 수 당		특수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9급1호봉	1,703,800	1,448,800	130,000	125,000	989,340	724,400	130,000	62,500	72,440	714,460
9급2호봉	1,759,400	1,504,400	130,000	125,000	1,019,920	752,200	130,000	62,500	75,220	739,480
7급1호봉	2,055,500	1,785,500	130,000	140,000	1,182,025	892,750	130,000	70,000	89,275	873,475
7급2호봉	2,136,900	1,866,900	130,000	140,000	1,226,795	933,450	130,000	70,000	93,345	910,105
5급1호봉	2,791,800	2,411,800	130,000	250,000	1,581,490	1,205,900	130,000	125,000	120,590	1,210,310
5급2호봉	2,889,300	2,509,300	130,000	250,000	1,635,115	1,254,650	130,000	125,000	125,465	1,254,185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급되는 수당>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수당

-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직계 존·비속 2만원, 둘째자녀는 6만원, 셋째자녀부터 10만원), 정근수당
가산금(근무연수에 따른 월정액 지급, 5~1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 초과근무수당 : 9급(8,357원), 7급(10,299원), 5급(13,368원), 월 15일 이상 근무시 월 10시간
정액분 지급

※ 정액급식비 : 전일제 주5일 근무기준 (1일 계산)

※ 시간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 시 기준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 육아휴직수당 : 시간선택제 근무 시 기준 월봉급액의 40%,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지급
- 명절휴가비 : 시간선택제 근무 시 기준 월봉급액의 60%, 연 2회 지급
- 성과상여금 : 해당직급의 성과등급별 지급기준액 별도 책정 후 지급

참고 3

국내외 장단기 위탁훈련 유형

1) 장·단기 국내 교육훈련

구 분		내 용	기 간	대 상
학 사	대학 야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학과가 개설된 국내 대학 단, 학기당 상한액 있음 	최대 5년	학사 미취득자 만 52세 이하
	사이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사이버대학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 평점 85점 이상시 학비 지원 	5년 범위내 최대 9학기	학사 미취득자
	방송통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 2.3 이상시 학비 지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대학원석사 야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국·공립 및 사립대 대학원 학기당 상한액 있음 	2년~ 2년 6개월	경력직 만 52세 이하
대학 외국어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외대, 충남대, 부산외대 등 9개 대학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어, 불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주간·야간 10~20주	제한없음
민간위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문제해결·리더십 등 민간의 최신 지식·기법을 습득 연간 100개 내외의 교육과정 개설 	2~5일 정도	제한없음

※ 과정에 따라 일정기간 실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상세 내용은 **인재개발정보센터** www.training.go.kr의 “국내교육훈련 소개” 참고

2) 장·단기 국외 교육훈련

구 분		내 용	기 간	대 상
단 기	개인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정부, 기관 및 연구소 	6개월 미만	만 55세 이하
	부처 맞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훈련국, 3개 기관 이내 훈련과제 관련업무 담당자 	3주 이내	
	부처 공동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훈련국, 3개 기관 이내 관련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팀 (2개 이상 부처 참여, 6명 이내) 	2주 이내	만 55세 이하 * 지자체 공무원 2인 이상 포함
	글로벌 공동 연수과정			
장 기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대학원, 국제기구, 정부기관, 연구소 학위과정 및 직무훈련과정 지원 	2년 내외	4~7급 경력직 만 48세 이하
	국내·외 연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KDI, KAIST, 서울대 + 외국대학 	국내1년 + 국외1년	만 48세 이하

※ 과정에 따라 일정기간 실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상세 내용은 **인재개발정보센터** www.training.go.kr의 “국외교육훈련 소개” 참고